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35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김성원 · 안철수 · 김선교
김정재 · 이인선 · 박충권
이헌승 · 고동진 · 김용태
박성훈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2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

을 처분한 경우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3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

을 처분한 경우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제5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생략)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u>

	<u>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u> <u>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 <u>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u>

3. (생략) ② · ③ (생략)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u> <u>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 <u>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 ----- -----. ----- -----
---	--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
자회사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
하여야 할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
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는 때에는 본 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
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
를 제공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
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
우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
반이 있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생략)

<신 설>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
자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하
여 허위의 정보 또는 자료
를 제공한 경우

5. (생략) ③ · ④ (생략)	<u>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u> <u>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u> <u>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u> <u>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을 위</u> <u>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u> <u>우</u> <u>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u> <u>반이 있는 경우</u>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